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의 금연구역 지정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37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82호)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20호)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1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33호)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02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10호)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2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개요	1
II. 검토의견	9
1.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의 금연구역 지정(김도읍의원안)	9
2. 과음경고문구에서 음주 경고 문구로 표기 변경 등(남인순의원안)	17
3.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담배 광고 규제 강화(안상훈의원안)	22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금연구역 지정(이학영의원안)	32
5.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의 지정(박덕흠의원안)	39
6.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 의료 건강정보와의 연계·활용을 위한 자료제 공의 법적 근거 마련(안상훈의원안)	47
7. ‘국민’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민형배의원안)	54
8.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등(서지영의원안)	69
※ 참고자료	80
1. 청소년 흡연을	80
2. 간접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81
3. 음주의 사회적 폐해	83
4. 현행 절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예방 사업	84
5.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	86
6. 전자담배 부착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88

I. 개요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33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21.
- (3) 회 부 일 : 2025. 2.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은 제외되어 있어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액상형 및 껌련형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38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4.

(3) 회 부 일 : 2025. 2.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도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3.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02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 외부에서는 그 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 제1호 및 제2항).

4.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6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7.

(3) 회 부 일 : 2025. 4.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5.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23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30.

(3) 회 부 일 : 2025. 5.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제4호 신설).

6.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70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10.

(3) 회 부 일 : 2025. 6.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7.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91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7.

(3) 회 부 일 : 2025. 6.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등).

8.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22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7. 2.

(3) 회 부 일 : 2025. 7.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 4까지 등).

II. 검토의견

1.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의 금연구역 지정(김도읍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⑦ ~ ⑨ (생 략)	<u>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 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을 말한다)</u> ⑦ ~ ⑨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금연구역의 지정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법 제정 당시에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나¹⁾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회·정부 등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대형건물 등 26종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아울러, 2017년 12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제9조제6항), 다시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 8. 16. 개정, 2024. 8. 17. 시행)되었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²⁾됨.

1)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8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금연구역 지정제도 연혁 >

연 도	내 용
1995년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대상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의료기관,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등 10종의 공중이용시설
1999년	-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변경·확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등 추가
2002년	- 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구분 ·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등
2003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확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2011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2017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2023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장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포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련 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돌봄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바,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생 87.7%, 중학생 78.0%, 고등학교 67.3%로 나타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³⁾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⁴⁾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시설에도 해당되는바, 그 조사를 위하여 파악한 전국 사설학원 수는 2024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90,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현황 >

(단위 : 개소수, %)

구분	사설 학원수	현황별 비율
계	89,285	100
서울	15,718	17.6
부산	5,033	5.6
대구	4,368	4.9
인천	4,355	4.9
광주	3,905	4.4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대전	2,135	2.4
울산	2,130	2.4
세종	1,095	1.2
경기	24,787	27.8
강원	2,149	2.4
충북	2,836	3.2
충남	3,289	3.7
전북	3,811	4.3
전남	2,587	2.9
경북	3,566	4.0
경남	6,305	7.1
제주	1,216	1.4

※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결과 보고(2024.11.29일 기준)

- 이처럼 많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습학원 등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같이 주변 3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 피해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참고자료 1, 2).
-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학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함.
- 다만, 현행법 제9조제7항5)에 의하여 지자체는 지역적 상황에 따라 교습학원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다는 점과 함께, 학원은 일정 면적의 교지·교사를 보유한 학교와 달리 복합상가건물 내 다양한 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주변 흡연자가 정확한 금연구역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울러 학원은 개·폐업이 잦은 특성이 있어 규제지역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겠음.

* 학원 수: 2021년 81,868개→ 2022년 85,841개→ 2023년 88,738개→ 2024년 90,385개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그 외,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 시행 준비 및 사전 계도 등을 위해 충분한 시행일이 부여될 필요도 있겠음.
- 참고로, 2024. 8. 17.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30미터 내 실외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48,688건 확대되어 이를 대비하여 2024년 금연지도원 약 522명을 추가 확보한 바, 개정안에 따른 금연지도원 추가 확보⁶⁾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 개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 등 시설의 주변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학원이 있을 수 있는 복합상가 건물 근처 실외 금연 구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책 수용성 및 지도·단속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 등 시설의 주변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 · 학원이 있을 수 있는 복합상가건물 근처 실외 금연 구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책 수용성 및 지도·단속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한국담배협회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경계 30미터 금연구역 규제가 도입된 지 1년 경과된 사정 고려할 필요 · 성인들의 흡연 제한 및 담배소매인의 영업권 침해 등 우려

6) '24년 기준 학원 89,285개소*522명/48,688개소 = 957.25명

2. 과음경고문구에서 음주 경고 문구로 표기 변경 등(남인순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과도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u>과다한 음주</u> 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 ----- ----- <u>음주</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u>과다한 음주</u> 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 ----- ----- ----- ----- ----- ----- <u>음주</u>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음주는 블랙아웃, 알코올성 치매와 같은 뇌손상, 지방간 등 간 관련 질환,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고,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등 암 발병률 및 고혈압 위험을 높이며,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경우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⁷⁾.
-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⁸⁾은 2017년 13조 8,884억원에서 2021년에는 14조 6,2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늘어나고 있음⁹⁾(참고자료 3).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억원, 비율(%))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138,884	143,253	145,413	145,791	146,274
명목 GDP	19,342,339	20,069,745	20,405,943	20,584,665	22,219,129
GDP 대비 비율	0.72%	0.71%	0.71%	0.71%	0.66%
건강보험 총 진료비	646,111	725,711	803,157	811,236	881,395
총 진료비 대비 비율	21.5%	19.7%	18.1%	18.0%	16.6%

* 출처: 라규원 등,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 한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제1항), 주류 판매용 용기에도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제8조제4항) 규정하고 있음.

7)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음주”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297

8) 비용항목 분류 : 직접비(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간접비(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 소득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손실액, 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산성저하액)

9) 라규원, 강하림 등. (2024).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pp.21~50.

< 「국민건강증진법」 상 음주폐해방지 관련 규정 >

-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1. 6. 7.>
-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02. 1. 19.>
-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미국 국립알코올중독 연구소에서는 ‘폭음’(binge drinking)이란 ‘남자의 경우 연거푸 5잔 이상, 여자는 4잔 이상을 짧은 시간 내 마시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월간 폭음’(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 음주한 경우)과 ‘고위험 음주’(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위험 음주로 보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4).

< 월간 폭음률 추이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남자	52.7%	50.8%	52.6%	51.9%	47.0%	48.8%	47.9%
여자	25.0%	26.9%	24.7%	24.7%	24.1%	25.9%	26.3%

자료: 질병관리청(2023), 국민건강통계

- 한편, 최근에는 음주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절주’보다는 ‘금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바,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건강을 위해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없다고 선언¹⁰⁾하였고,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또한 ‘술’은 1군 발암요인으로서 하루 1~2잔 정도의

10) WHO 발표자료(2023.1.4.): ‘No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is safe for our health’

음주로도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음.

아울러, 최근 세계질병부담에 관한 연구(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GBD)에서도 전체 질병 위험을 최소화하는 음주량은 '0'임을 발표하였음¹¹⁾.

* 세계질병부담 관한 연구(GBD)는 1990년부터 세계 모든 국가 민족들이 어떤 방법으로 죽어가는지를 조사하는 가장 권위있는 평가 프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보건기구(World Bank)이 주관하는 연구로서, 369개 질병 및 부상과 87개 위험요인에 대한 세계 보건의 최신 추정치를 분석함.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내용 및 경고 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음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해에 적정음주는 없다는 등의 내용의 「음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금년부터 적극 교육·홍보할 계획임.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 |
|--|
| <p>○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적정 음주는 없습니다.(세계질병부담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건강 손실을 최소화하는 음주량은 '0'이라고 하였음)- 음주는 건강을 위협하는 해로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 암연구소는 1988년에 술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음)- 술은 종류와 가격, 질에 상관없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p>○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절대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삼갑니다.-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하지 않습니다. |
|--|

11) 음주와 질병 위험도에 관하여, 한두 잔의 음주가 허혈성 심질환위험을 낮출 수도 있으나, 암과 다른 질환(당뇨, 결핵 등)은 음주량에 따라 질병위험도가 증가하므로 소량음주도 결국 건강에 유해하다고 발표함.

□ 다만, 제8조 및 제8조의3 조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절주’라는 표현 또한 ‘금주’로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 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부칙에서 사용한 ‘출고’라는 용어는 「주세법」과 같이 ‘반출’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 고시 등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위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과음경고문구를 담배 경고 문구와 같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구체화하고, 경고문구에서 ‘지나친’이라는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 과음 경고문구를 담배 경고문구와 같이 간결·명료하게 구체화하고, 경고문구에 ‘지나친’을 수정할 필요성에 공감
주류산업협회 등 ¹²⁾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을 설계하여, ‘해로운 음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

12) 주류수입협회는 주류 판매용기에 음주운전의 폐해 내용 추가 및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음주 폐해 예방 효과를 충분히 살펴 본 후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책임있는 음주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경고문구 변경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담배 광고 규제 강화(안상훈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과 같이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 등을 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제1항제1호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 ----- -----.
1. <u>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u>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지정소매인 또는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	② ----- ----- <u>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u>

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 ⑤ (생 략)	<u>정소매인</u>-----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담배 광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지정소매인¹³⁾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포스터의 전시·부착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영업소 외부에 광고물이 보이도록 전시·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담배광고를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31조의2제4호)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에서 정한 담배 광고에 대한 제한 >

- 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을 전시·부착하는 행위(다만,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부착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품종군별 연간 10회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③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 ④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등에서 하는 광고

- 참고로, 「담배사업법」은 담배 광고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고 있음.

<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담배 광고에 대한 제한 >

-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¹⁴⁾.
③ · ④ (생략)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4)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는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도 당사국은 모든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미성년자가 담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을 영업소 내에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이 권고되고 있음.

< 담배 광고 및 담배제품 진열 금지에 관한 FCTC 규정 >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1. 당사국은 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가 담배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임을 인식한다.
2. 각 당사국은 각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모든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시행한다.(…)
3. ~ 8. (생략)

제16조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이 규정한 연령 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부차원에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나. 상점의 선반 진열과 같이 담배제품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한 모든 방식의 담배제품 판매 금지

- 담배 광고와 흡연욕구 간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대학생 대상 담배 마케팅 노출 실태 설문조사에서 담배 광고 및 판촉을 경험한 대학생 응답자 중 20%가 광고·판촉 경험 이후 흡연 호기심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고, 4.8%는 실제 담배를 구매한 답변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¹⁵⁾, 청소년 담배 마케팅 노출 실태 모니터링에서는 청소년 916명 중 94.5%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85.5%가 담배 광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고, 담배 진열과 담배 광고를 목격한 후 각각 8.5%, 8.3%가 흡연욕구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하는 등¹⁶⁾ 담배 광고에 대한 국내외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상

15) 대학생 1,500명 대상 2019년 10월과 11월에 걸친 설문조사임: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도참고자료, 「일상생활 곳곳의 다양한 담배 홍보[마케팅], 담배회사의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을 노린다」, 2020. 10. 6.

16) 「청소년 담배 마케팅 노출 실태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생활 곳곳의 다양한 담배 마케팅이 특히 미래의 고객이라 할 청소년과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전자담배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자담배 판매점 밖에서 누구나 쉽게 판매 여부를 알 수 있고 관련 광고 또한 급속히 유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게도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을 볼 수 없게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전자담배 광고가 불특정 다수, 특히 청소년과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2017년 2.3%에서 2023년 1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전자담배(액상형) 사용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3.0% 내외로, 특히 여학생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2.4% 수준임.

<담배 판매량 및 제품별 판매 비중>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판매량(억 갑)	35.2	34.7	34.5	35.9	35.9	36.3	36.1
궐련담배	34.4	31.4	30.6	32.1	31.5	30.9	30.0
궐련형 전자담배	0.8	3.3	3.8	3.8	4.4	5.4	6.1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	2.3	9.5	11.0	10.6	12.3	14.9	16.9

자료: 보건복지부

<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

		(단위: %)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¹	전체	2.2	2.7	3.2	1.9	2.9	3.3	3.1
	남자	3.3	4.1	4.7	2.7	3.7	4.5	3.8
	여자	0.9	1.1	1.5	1.1	1.9	2.2	2.4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²	전체	-	-	2.6	1.1	1.4	2.3	2.1
	남자	-	-	4.0	1.6	1.8	3.2	2.7
	여자	-	-	1.2	0.5	0.8	1.3	1.4

1.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2.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궐련형 전자담배(궐련담배, 예이코스, 글로, 릴 등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

□ 한편, 담배의 정의는 「담배사업법」 및 「지방세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담배’¹⁷⁾에 관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전제로 한 규정(「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율)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를 전제로 한 규정(국민건강증진금 부담주체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규정)이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에 대한 규제로, 규제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담배사업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반면, 제23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 내에서 지방세 등과 함께 부과·징수되는 것이어서 규율대상을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각 조항의 규제대상이나 규제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담배’의 정의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국민건강증진법」은 제8조제1항에서 처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담배’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인지, 「지방세법」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략)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후단 생략)

③ (생략)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은 담배: 1그램당 534.5원

-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율하고자 하는 제9조의4 규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전제하고 있어 현행 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중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규제 범위 안에 있는 반면, 「지방세법」에 따라 연초의 잎 외 줄기, 뿌리 등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소¹⁸⁾의 경우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한없이 담배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금번 개정을 통해 연초의 잎 외 줄기, 뿌리 등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소에 대해서도 광고 제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청소년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의 경우 아직까지 「담배사업법」이나 「지방세법」상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입법취지 달성에는 한계도 있어 보임.
- 특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아래 표 중 2와 3을 구분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액상채집, 시험관 분석 의뢰, 결과 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 단속 가능성에 현장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효과적인 광고 규제를 위해서는 담배의 범위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도 포함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전제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18)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과세대상을 규율하고 있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소에 대한 관리체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원료에 따른 전자담배 규제 현황 >

전자담배 원료에 따른 분류	현행법상 광고규제	개정안에 따른 광고규제
❶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것(담배사업법상 담배)	적용	적용
❷ 연초의 줄기·뿌리(천연니코틴)가 원료인 것(지방세법상 담배)	미적용	적용
❸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것	미적용	미적용

□ 한편,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의 정의에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포함시켜 확대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실시한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2024. 12. 13.)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잔류량이 연초 니코틴 원액의 유해물질 잔류량보다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합성 니코틴도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 제22대 국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현황 >

연 번	대표 발의	의안번호	주요 내용
1	박성훈의원	22017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2	김태년의원	2202471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
3	김선민의원	220256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연 번	대표 발의	의안번호	주요 내용
4	남인순의원	220287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또는 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확대 규정
5	한지아의원	2202898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 등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규정
6	전진숙의원	220464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 연초 나 니코틴’으로 확대 규정
7	김준혁의원	2205037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로 확대 규정, 전자담배(연초 니코틴) 정의 신설
8	송언석의원	2205041	- 담배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 규정
9	최은석의원	22051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로 확대 규정
10	조은희의원	220552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 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된 니코틴’은 제외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광고 규제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것으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초의 뿌리·줄기로 만들어진 전자담배를 광고 규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오히려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거나, 풍선효과로 인하여 합성니코틴 시장 수요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고, 전자담배의 원료에 따라 규제 적용이 달라지게 되면¹⁹⁾ 실제 단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9)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연초의 줄기·뿌리(천연니코틴)가 원료인 것(「지방세법」상 담배)와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 액상 채집→시험관 분석의뢰→결과분석→결과에 따른 규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 대비 행정력 소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임.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이학영의원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u><신설></u>	26. 「산업안전보건법」 제128
	<u>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u>
26. (생략)	27. (현행 제26호와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신 설>

⑦ ~ ⑨ (생략)

⑥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경계선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⑦ ~ ⑨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금연구역의 지정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법 제정 당시에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나²⁰⁾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회·정부 등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대형건물 등 26종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아울러, 2017년 12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제9조제6항),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 8. 16. 개정, 2024. 8. 17. 시행)되었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²¹⁾됨.

20)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8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8조의2제1항),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준²²⁾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제128조의2제2항²³⁾).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

	모든 사업주 (§128의2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128의2②)
개념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로, <u>1명만 근로자로 고용해도 해당</u>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또는 ② 10인 이상 이면서 7개 취약 직종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
의무	휴게실 설치 의무 有	시행규칙 상 기준을 준수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有
휴게실 설치의무 위반시 제재	없음	• 휴게시설 미설치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175③) •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75④)

22)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 가. 전화 상담원
 -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 라. 텔레마케터
 - 마. 배달원
 - 바. 청소 관련 종사자
 - 사. 아파트 경비원
 -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23)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는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의 작업 환경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금연’ 관련 내용은 미비한 실정으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간접 흡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휴게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지자체장이 휴게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등을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행 제9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들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반면²⁴⁾ 사업장의 휴게시설은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휴게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지의 문제와 함께, 소규모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부담하지만,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할 환경 기준 등은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 적용²⁵⁾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2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고려하여, 관리 감독 범위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환경 관련 기준에 금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지자체장이 사업장의 휴게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를 동일선상에서 규율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도 있겠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휴게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휴게시설 자체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휴게시설 주변 10미터의 경우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의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다는 의견임. 또한 휴게시설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휴게시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사업장의 휴게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을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 · 다만, 휴게시설 자체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제9조제4항의 공중이용시설과는 다르고, 휴게시설 주변 10미터 또한 제9조제6항의 아동·청소년 간접 흡연 예방 취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휴게시설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휴게시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
한국담배협회	· 개정안은 흡연자의 현실적 휴식권과 흡연권 침해,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심화의 소지가 있고, 휴게시설과 흡연 공간의 물리적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에서는 휴게시설이 ‘임시 설치된 컨테이너’나 ‘야외 쉼터’ 등 한정된 공간에만 설치 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으나 휴게시설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차량 통행로, 기계 작동 구역과의 동선 중복으로 안전 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연구역 지정은 일률적인 거리 기준보다는 사업장 유형, 구조, 공간 여건에 따라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별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
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u><신설></u>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u>
<u>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u>
<u>장소·구역을 표시하는 기</u>
<u>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u> |

⑦ ~ ⑨ (생 략)	<u>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u> <u>인 구역</u> ⑦ ~ ⑨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금연구역의 지정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법 제정 당시에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나²⁶⁾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회·정부 등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대형건물 등 26종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아울러, 2017년 12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제9조제6항), 다시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 8. 16. 개정, 2024. 8. 17. 시행)되었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²⁷⁾됨.

26)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8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7)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금연구역 지정제도 연혁 >

연 도	내 용
1995년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대상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의료기관,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등 10종의 공중이용시설
1999년	-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변경·확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등 추가
2002년	- 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구분 ·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등
2003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확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2011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2017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2023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장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포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련 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현행법에 따라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은 금연구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나²⁸⁾ (제9조제4항제14호), 실외 장소인 ‘택시 승차대²⁹⁾’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실외공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³⁰⁾에 의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 >

구분	금연구역 유형	지정 현황 개수(개)
전국	계	186,871
	도시공원	14,040
	교육환경보호구역	14,153
	버스정류소	117,135
	택시정류소	2,960
	해수욕장	156
	거리	763
	광장	142
	지하철역 주변	4,233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7,122
	횡단보도	20,394
	기타	5,773

자료: 보건복지부(2025년 5월 기준), 지자체마다 금연구역 유형은 상이함.

2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이러한 택시승차대 표시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지자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확대를 통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금번 안전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 스티커 부착에 5년 동안 연 평균 1억 1,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다만,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지자체장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특별히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취지인 반면, 개정안에서 규정한 택시승차대 주변은 일반 대중들이 제한 없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택시 정류소 등 일정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히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하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규모나 위치가 상이한 상황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자 및 주변 보행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외 장소·구역은 매우 다양하여 법률로 일괄적으

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필요³¹⁾가 있고, 택시 승강장 주변의 경우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교통 여건, 택시 이용 수요, 금연구역 설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자 및 주변 보행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 · 실외 장소·구역은 매우 다양하여 법률로 일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신중한 필요가 있고, 택시 승강장 주변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교통 여건, 택시 이용 수요, 금연구역 설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WHO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도 실내흡연 금지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실외금지는 기본권 충돌, 사회적 수용성 등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특정 실외장소를 지자체 조례 등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실외장소를 흡연 금지한 사례는 없음.
한국담배협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교통량, 사업장 구조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탄력적 행정 운영과 자율성을 전제로, 지자체의 택시승강대 관리규정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 · 기둥, 표지판, 선 등 택시 정류장을 표시하는 모든 구조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일괄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게 넓은 규제에 현실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택시 승차대는 규모, 위치 등 공간 특성상 정확한 경계가 모호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에게도 혼란과 불편 초래

31) 보건복지부는 WHO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도 실내흡연 금지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실외금지는 기본권 충돌, 사회적 수용성 등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특정 실외장소를 지자체 조례 등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일본 도쿄도 내 신주쿠구·시부야구는 흡연구역 외 길거리에서 실외 흡연 금지)는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실외장소를 흡연 금지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임.

6.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와의 연계·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안상훈의원안 제30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영양조사나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 전단), 종합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됨(제4조제2항제5호).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고,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총괄 목표인 ‘건강수명’이나 ‘건강형평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 ④ (생략)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계획 성과지표: 총괄목표 - 대표지표 - 성과지표로 구성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목표 '20년 75.0세),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³²⁾) '16년 기준 73.0세(남성 70.7, 여성 85.1)로 '10년 대비 1.7세 증가(WHO 기준)	
* (일본) 74.8세, (호주·노르웨이) 73.0세, (영국) 71.9세, (미국) 68.5세	
- (건강형평성)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성별·지역별·소득수준별 건강격차 등	
* 소득격차는 ‘상-하’, 지역격차는 ‘동-읍면’, 계열격차는 ‘일반-특성화’, 대상격차는 ‘건강보험-의료급여’로 격차의 크기는 그 차이의 절댓값으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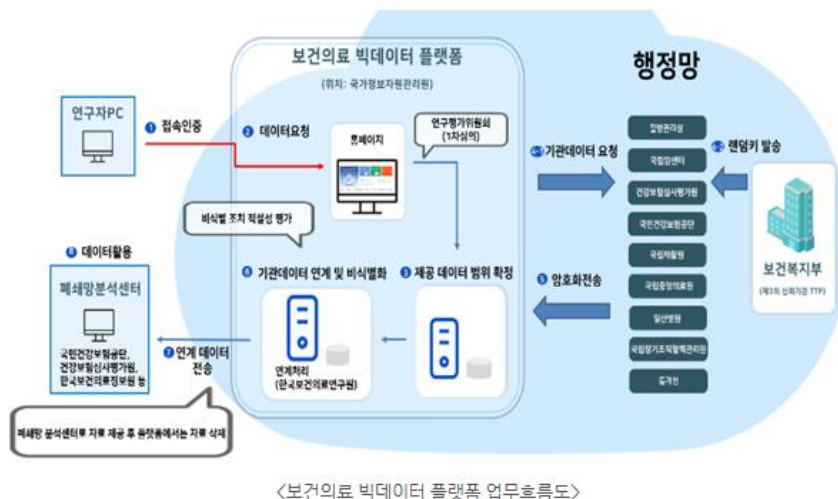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 건강설문, 영양으로 구분되며, 만성질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식품섭취 등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됨.

구분	조사영역	비고
검진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근감소증, 폐질환, 골다공증 등	이동 검진 차량 내 조사
건강설문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안전의식, 이환, 의료이용,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손상,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영양	아침식사, 외식섭취 빈도, 식이보충제, 영양표시 이용, 주요 식품군 섭취 빈도, 수유·이유 현황 등 식생활, 식품안전성, 음식 및 식품 섭취	

32)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기간(유병기간)을 뺀 수치임.

□ 국민건강영양조사(참고자료 5)에서 알 수 있는 만성질환, 비만, 흡연, 음주와 같은 데이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내역이나 투약 정보 등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건강 위험 유발 요인 추출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 목적의 일반적 데이터 요청 절차에 따르고 있는 실정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에 제공하고 있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www.blog.naver.com/mohw2016)

- 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목록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롯해 데이터셋 약 70여종에 달함.

구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카달로그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대기오염, KoGES기반 통합자료, 예방접종,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등	데이터셋 24종 (변수 15,102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및 보험료, 일반건강검진(문진, 대상자) 영양기관, 사망정보 등	데이터셋 11종 (변수 54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세서 일반내역, 진료내역, 원외처방전상세내역, 수진자 상병내역	데이터셋 4종 (변수 58개)
국립암센터	암등록	데이터셋 1종 (변수 7개)
통계청	사망원인정보	데이터셋 1종 (7개 변수)
국립재활원	간호 임상관찰기록, 의무기록용 상병정보 등	데이터셋 5종 (변수 62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이식 수혜자 및 공여자 정보	데이터셋 2종 (변수 209개)
국립중앙의료원	치매관리 등	데이터셋 11종 (변수 23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환자정보, 수진, 진단, 검사 수술 등	데이터셋 9종 (변수 59개)

자료: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www.blog.naver.com/mohw2016)

- 연구 목적의 일반적 데이터베이스 신청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연구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신청하여 제공되는데, 약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 자료제공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과 같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내역, 투약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되면,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축적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³³⁾를

33) 암 등록 환자의 암 등록(국립암센터), 국가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청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통계청)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임.

활용하여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등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을 분석할 수 있고, 건강수명 산출을 위해 의료 이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표 질환의 유병자³⁴⁾·발병자 규모를 산출, 건강수명 결정 요인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보다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증진 정책 개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자료제공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로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의료법」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손상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손상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34) 만성질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 또는 과거 중대한 건강문제의 병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측면보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에 연계·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 중인 자료는 민감 개인정보³⁵⁾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남용 방지를 위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정보 수집 및 목적 외 이용·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문의 신설 필요성³⁶⁾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겠음.

□ 그 외, 조문의 위치를 보칙 중 ‘보고·검사’ 뒤로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고·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

35)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6)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제19조 등) 규정이 있으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5조제3항) 및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와 관련해서도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의 연계·활용으로 다양한 건강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타 기관의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민 건강 변화를 파악하고,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암 등) 발생 및 사망과 다양한 위험요인(사회·경제적 위치, 건강행태, 영양, 의료 이용 등) 간의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근거 기반 건강정책 개발에 기여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임.

7. ‘국민’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민형배의원안 제1조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제명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바꾸고,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시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민에게</u>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u>국민의</u>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시민에게</u> ----- ----- ----- ----- ----- <u>시민의</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국민건강증진사업</u> ”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u>국민의</u>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1. -- <u>시민건강증진사업</u> ----- ----- ----- ----- <u>시민</u>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	제3조(책임) ① -----

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시민의-----
-----시민건강-----
-----.

② -----시민-----

-----.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
-----시민-----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
-----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시민건강증진종합계획-----

-----.

② -----
-----.

1. 시민건강증진-----

추진방향	-----
2. <u>국민건강증진</u> 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2. <u>시민건강증진</u> ----- -----
3. <u>국민건강증진</u> 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3. <u>시민건강증진</u> ----- -----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u>국민</u> <u>건강증진기금</u> 의 운용방안	4. ----- <u>시민</u> <u>건강증진기금</u> -----
4의2. (생 략)	4의2. (현행과 같음)
5. <u>국민건강증진</u>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u>시민건강증진</u> ----- -----
6. 그 밖에 <u>국민건강증진</u> 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6. ----- <u>시민건강증진</u> ----- -----
제5조(<u>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u> <u>회</u>) ① <u>국민건강증진</u> 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u>국민건강증진정</u> <u>책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u>시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u> <u>회</u>) ① <u>시민건강증진</u> 에----- ----- ----- <u>시민건강증진정</u> <u>책심의위원회</u>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u>국민</u> <u>건강증진기금</u> 의 연도별 운용 계획안·결산 및 평가	2. ----- <u>시민</u> <u>건강증진기금</u> ----- -----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 련되는 주요 <u>국민건강증진시</u> <u>책</u> 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3. ----- ----- <u>시민건강증진시</u> <u>책</u>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 6. (생략)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
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생략)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
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
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
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민건강증진-----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

-----시민건강
증진기금-----

시민건강증진사업-----

-----.

② -----
-----.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 5. (생략)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7.·8. (생략)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 10.·11. (생략)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③ ~ ⑥ (생략)

제2장 國民健康의 관리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민건강증진-----
2. ~ 5. (현행과 같음)
6. 시민건강증진사업-----
- 7.·8. (현행과 같음)
9. 시민건강증진-----
- 10.·11. (현행과 같음)
12. -----시민건강증진-----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장 시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

-----시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

-----시민건강의식-----

-----.

② ~ ④ (생 략)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국민에</u> 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u>국민건강</u> <u>에</u>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 보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 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 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 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u>국민의 건강</u> 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생 략) ③ (생 략)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 지 또는 제한)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u>시민에</u> ----- -----<u>시민건</u> <u>강</u>-----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시민</u>----- -----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 지 또는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시민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시민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시민

②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

-----시민건강증진사업관련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
시민건강증진-----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

-----시민건강증진사업
관련-----

--.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 ----
-----시민

-----.

② (생 략)

제15조(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3. (생 략)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 · 식품 섭취 · 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영양개선) ① -----
-----시민-----
-----시민-----

-----.

② -----시민-----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시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
-----시민-----
-----시민-----
-----시민-----

-----.

② -----
시민영양조사-----

-----.

③ 시민영양조사-----

-----.

④ 시민영양조사의-----
-----시민영양조사와-----

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

-----.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시민-----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
-----시민-----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
-----시민건강증진사업-----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검진) -----

-----시민-----

시할 수 있다.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國民健康增進基金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⑦ (생략)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 5. (생략)

-----.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

-----시민-----

-----.

제3장 시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 -----

-----시민건강증진사업

-----시민건강

증진기금-----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시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1. -----

시민건강관리사업

2. ~ 5. (현행과 같음)

6. <u>국민영양관리사업</u> 7. ~ 11. (생 략) 12. 그 밖에 <u>국민건강증진사업</u> 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제27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u>국민영 양조사</u>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6. <u>시민영양관리사업</u> 7. ~ 11. (현행과 같음) 12. -----<u>시민건강증진사업</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도·훈련) ① ----- ----- -----<u>시민영양</u> <u>조사</u>----- ----- ----- ----- -----. ②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 1. 5. 제정(1995. 9. 1. 시행) 이래 계속 동일 제명을 유지하면서, 정의 등 각 조문에서도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통상 국가 규율의 수범자적 의미를 갖는바, 현행 법률명 중 ‘국민’이 포함된 사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있고, 현행 법률명에 ‘시민’이 포함된 사례는 없음.

< 법률명에 ‘국민’이 포함된 경우 >

소관부처	법률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법무부	국민참여재판법
고용노동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법

-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의 개별 조문(제27조제1항)에서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의미로 규정한 사례가 제한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에 따르면 시민은 ‘① 시(市)에서 사는 사람 및 ②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안³⁷⁾은 이러한 ‘국민’이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 참여자로서의 의미가 강화된,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능동적인 주체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정치·사회학적으로도 ‘국민’이 18세기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로 주로 발현된 반면, ‘시민’은 자유주의 사상의 토대 위에 참여적 성격이 강조되는 의미로 쓰인 경향이 있음³⁸⁾.

□ 다만, 앞서 보았듯이 「국민투표법」³⁹⁾, 「국민건강보험법」⁴⁰⁾, 「국민영양관리법」⁴¹⁾ 등 다른 법률 외에 「대한민국헌법」⁴²⁾에서도 국민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시민’이라는 용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7) 「국민체육진흥법」(의안번호 제2210908호)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안번호 제2210899호)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38)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p.70 및 p.199.

39) 「국민투표법」 제7조(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40)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1) 「국민영양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법 적용 대상의 명칭을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의 단어로 변경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실체적 실익이 없고,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국민’이 권리·의무 주체이자 국가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반면, ‘시민’은 도시의 구성원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통용되어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등(서지영의원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정의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담배갑포장지 등에 경고문구·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가향물질 표시 제한, 광고에 대한 규제 적용대상에도 전자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u>담배갑포장지</u> 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담배등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u>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하 “담배등”이라 한다)</u> ----- ----- <u>담배갑포장지 또는 담배 포장용기(이하 “담배갑포장지등”이라 한다)의 앞면·뒷면·옆면</u> -----

1. ~ 3. (생략)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암성물질

가. ~ 바. (생략)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
우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
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
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
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담배등

가. ~ 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담배갑포장지등의

담배갑포장지등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담배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략)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담배등-----

-----.

제9조의4(담배등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등-----

1.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또는 지정소매인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자, 「담배사업
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
정소매인-----.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 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u>담배</u>의 품명·종 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 4. (생 략) ④ 제조자등은 <u>담배</u>에 관한 광 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 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u>담배</u>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6. (생 략)	<u>에게 판매하는 자, 도매업자 또 는 지정소매인</u>----- -----. ③ ----- ----- -----. 1. -----<u>담배등</u>----- ----- ----- 2. ~ 4. (현행과 같음) ④ -----<u>담배등</u>----- ----- -----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담배등</u> ----- 5.·6.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 관련 체계는, 담배자판기의 설치·운영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제9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제9조의2),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제9조의3) 및 담배 광고 금지·제한(제9조의4) 규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제23조)에 관한 규정으로 나뉘어 있음.
- 후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⁴³⁾, 제9조의 규율 대상인 ‘담배’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에게 일정 장소 외 담배 자동판매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제9조제2항)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경고문구 등 표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제9조의2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제9조 등에 따른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43)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1) 쉐련형: 20개비당 750원
 -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은 담배: 1그램당 534.5원

<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지방세법」 상 담배 정의 비교 >

「담배사업법」 상 담배(제2조제1호)	「지방세법」 상 담배(제47조제1호)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제2조제1호)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켄련·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포함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조항에도 적용되나⁴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한 것은 「지방세법」 상 담배에만 포함됨. 아울러 현행법 체계상 담배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성니코틴’을 이용하는 것은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담배의 종류 중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7조의2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60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양 시행령 규정은 모두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를 전제하는 것⁴⁵⁾으로, 개정안의 정의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제60조제5호)로 각 시행령 규정과 유사하게 되어 있음.

44) 「지방세법」 제48조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담배’에도 포함됨.

4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7조의2)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를 전제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 위임을 받은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기타 유형

3. ~ 9.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 4. (생략)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의2. ~ 8. (생략)

□ 개정안은 경고문구 등 표시,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의 대상인 담배에,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뿌리 등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료를 연초 잎으로 한 전자담배의 경우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포함되므로 이미 경고문구 등이 표시되고 있는 등 따로 규율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참고자료 6), 전자담배의 정의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담배’ 정의를 차용하여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을 원료로 한 것을 포함시키는 효과와 함께, 천연니코틴 외에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것까지 모두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담배 정의 규정에 포함된 ‘니코틴’은 「지방세법」상의 ‘담배’가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을 원료로 한 것으로 전제하므로 ‘천연니코틴’으로 해석되는 반면, 「국민건강증진법」 체계 내에서 ‘담배’ 자체의 정의가 없는 가운데 ‘니코틴’을 규율하게 되면 그러한 해석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참고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을 살펴 보면, 최근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 >

(단위: 톤, 천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천연	잎 추출	55	5,638	2	160	280	23,263	554	38,969	555	44,456
	다른 부분	417	28,823	218	11,043						
합성										98	6,444

자료: 관세청

*중량 = 용액+용기 무게

- 최근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2017년 2.3%에서 2023년 1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고, 가향물질 표시 제한 및 광고 등 제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전자담배의 건강위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담배 판매량 및 제품별 판매 비중>

구분	'17	'18	'19	'20	'21	'22	'23
판매량(억 갑)	35.2	34.7	34.5	35.9	35.9	36.3	36.1
궐련담배	34.4	31.4	30.6	32.1	31.5	30.9	30.0
궐련형 전자담배	0.8	3.3	3.8	3.8	4.4	5.4	6.1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	2.3	9.5	11.0	10.6	12.3	14.9	16.9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현재 ‘담배’의 정의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기초로 다수의 법률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담배 정의 자체의 확대 논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담배사업법」상 담배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체계상 ‘담배’의 정의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유통·판매·허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경고그림, 가향물질 표시 제한, 담배에 관한 광고 등 제한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⁴⁶⁾), 2025. 11.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⁴⁷⁾, 유해성분 공개⁴⁸⁾의 전제가 되고 있음.

□ 참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심사 중임.

4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47)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① 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8)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을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현황 >

연 번	대표 발의자	의안번 호	주요 내용
1	박성훈의원	22017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2	김태년의원	2202471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
3	김선민의원	220256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4	남인순의원	220287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또는 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확대 규정
5	한지아의원	2202898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 등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규정
6	전진숙의원	220464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7	김준혁의원	2205037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로 확대·규정, 전자담배(연초 니코틴) 정의 신설
8	송언석의원	2205041	- 담배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규정
9	최은석의원	22051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로 확대·규정
10	조은희의원	220552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된 니코틴은 제외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규제의 사각지대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도 포함하여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등을 적용시키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 달성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이고,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정의의 개정 없이 「국민건강증진법」만 개정될 경우 법률 간 충돌의 여지가 있고, 특히 「담배소매법」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별도의 소매인 지정 없이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지정소매인과 동일한 광고 주체로 간주하고 광고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정 소매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임⁴⁹⁾.

49)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 ‘전자담배’의 정의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반복 기술한 것은 입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함.

【참고1】	청소년 흡연율
--------------	----------------

□ 청소년(중1~고3) 흡연 관련 통계 현황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현재 흡연율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9.2	7.8	6.3	6.4	6.7	6.7	4.4	4.5	4.5	4.2
	중1	1.7	0.9	0.8	0.7	0.8	1.0	0.7	0.8	0.8	0.9
	중2	4.1	3.2	2.3	3.2	3.2	3.5	1.6	1.8	2.2	2.1
	중3	7.9	5.3	4.2	4.9	4.9	5.0	3.0	3.0	3.1	3.5
	중학교	4.7	3.3	2.5	3.0	3.0	3.2	1.7	1.9	2.1	2.2
	고1	11.3	9.1	7.1	7.0	7.7	8.3	4.8	5.4	5.1	4.3
	고2	13.5	11.9	9.4	9.7	9.4	10.0	7.2	7.3	7.1	7.3
	고3	15.7	14.0	12.0	10.9	12.0	11.4	9.2	8.8	9.2	7.9
	고등학교	13.5	11.7	9.5	9.2	9.8	9.9	7.1	7.2	7.1	6.4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 처음 흡연 경험 연령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평균연령	12.6	12.7	12.7	12.9	13.0	13.2	13.6	13.5	13.5	13.6

<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통계없음					7.3	4.8	5.2	5.4	5.1
	중1						1.1	0.8	1.0	1.1	1.3
	중2						4.0	1.8	2.2	2.7	3.0
	중3						5.6	3.4	3.7	4.0	4.4
	중학교						3.6	2.0	2.3	2.6	2.9
	고1						9.0	5.4	6.1	6.2	5.2
	고2						10.9	7.8	8.5	8.5	8.3
	고3						12.1	9.9	9.9	10.5	9.4
	고등학교						10.7	7.7	8.2	8.4	7.5

※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

【참고2】	간접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

☐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질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청소년 영유아	성인
단기 건강장애	폐암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2형 당뇨병 우울증
상기도 감염 삼출성 중이염 영아사망 및 선천기형 유발 천식의 악화 기관지염 폐렴 성장발달장애	
장기 건강장애	
폐기능 감소 천식발생률증가 암발생 증가 우울증	

☐ 청소년(중1~고3) 간접흡연 관련 통계 현황 (청소년건강 행태조사 통계)

< 주1일 이상 학교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통계없음				20	21.6	7.2	7.9	통계없음	
	중1					11.8	16.0	5.2	4.9		
	중2					14.6	16.7	5.1	5.5		
	중3					16.2	17.5	5.0	6.8		
	중학교					14.3	16.7	5.1	5.7		
	고1					22.4	23.5	7.1	8.5		
	고2					24.5	25.9	8.7	9.5		
	고3					27.6	28.4	12.2	12.5		
	고등학교					25.0	26.0	9.3	10.2		

※ 최근 7일 동안 학교 실내(교실, 화장실, 복도 등)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주1일 이상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통계없음				51.4	52.5	42.2	40.0	49.7	47.6
	중1					46.4	52.2	42.8	38.0	51.0	51.7
	중2					50.6	53.0	42.3	40.2	53.2	52.1
	중3					53.1	53.7	41.4	43.5	53.6	50.1
	중학교					50.2	53.0	42.2	40.5	52.6	51.3
	고1					52.3	52.3	43.0	40.5	48.7	46.7
	고2					52.5	53.3	43.1	39.9	47.0	44.5
	고3					52.6	50.9	40.4	38.1	44.3	39.8
	고등학교					52.5	52.1	42.2	39.5	46.7	43.9

※ 최근 7일 동안 집 또는 학교가 아닌 실내(상점, 식당, 쇼핑몰, 공연장, PC방, 노래방 등)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참고3】	음주의 사회적 폐해
--------------	-------------------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억원, 비율(%))

년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138,884	143,253	145,413	145,791	146,274
명목 GDP	19,342,339	20,069,745	20,405,943	20,584,665	22,219,129
GDP 대비 비율	0.72%	0.71%	0.71%	0.71%	0.66%
건강보험 총 진료비	646,111	725,711	803,157	811,236	881,395
총 진료비 대비 비율	21.5%	19.7%	18.1%	18.0%	16.6%

출처: 논문(라규원 등, 2024) 및 통계청

<연간 음주폐해 경험률>

(단위 : % (표준화율))

시 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서울특별시	5.6	3.2	5.1	7.2	7.7	5.2
부산광역시	3.8	1.9	5.9	6.2	6.9	5.6
대구광역시	5.3	3.5	3.3	2.6	4.8	3.2
인천광역시	5.9	5.6	5.7	6.9	8.5	5.1
광주광역시	4.5	1.6	4.4	3.1	4.7	3.9
대전광역시	2.5	2.1	6.1	2	6.2	1.8
울산광역시	4.5	1.5	3.5	2.7	4.9	2.7
세종특별자치시	8.3	2.1	3.4	5.5	9.5	7
경기도	4.9	2	6.1	3.3	6.4	3.7
강원도	5.1	1.8	4.9	2.6	5.7	2.8
충청북도	4.8	2.3	6.1	4.6	6.7	2.7
충청남도	4.7	1.8	6.3	4.2	9.1	4.3
전라북도	5.9	2.4	6.1	3.3	5.8	4.7
전라남도	3.9	1.9	4.5	4.6	8.4	3.5
경상북도	3.8	4.6	5.7	2.9	6.3	3.5
경상남도	6.7	4.4	12.6	4.9	6.1	3.6
제주특별자치도	3.7	1.7	6.1	3.2	4.9	5.3

※ 이외 기간은 조사결과 없음.

출처 :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청)

【참고4】	현행 절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예방 사업
--------------	-------------------------------

<음주폐해예방사업 24', 25' 예산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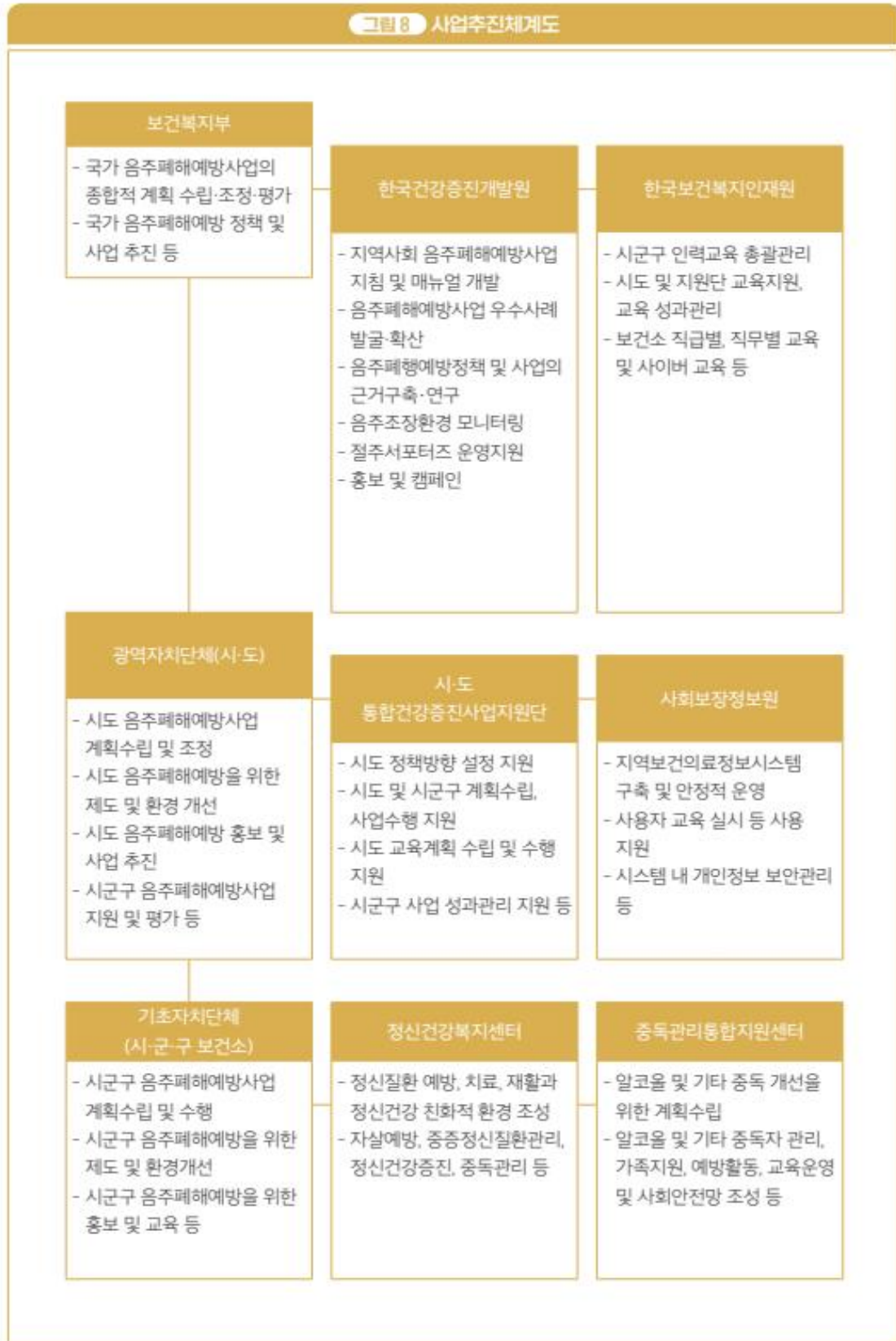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2024	2025	증감 및 비고
	예산안 (수정)	정부안 (조정)	
국민건강증진기금	186,841	173,246	△13,595
○ 건강증진 사업관리	55,970	50,750	△ 5,200
- 음주폐해예방관리	1,298	975	△ 323
· 음주폐해예방홍보	433	334	△99 (인건비 이관) · 음주폐해예방의 달 및 절주서포터즈 운영비 · 공익광고 제작·송출비
· 음주조장환경모니터링	417	241	△176 (인건비 이관) · 방송·인쇄·통신 광고 모니터링 · 대중교통시설 광고 모니터링 · 간판 등 옥외 광고 모니터링 · 주류판매점 광고 모니터링
- 음주폐해예방사업 운영 · 음주폐해예방 홍보	448	400	△48 · 홍보전략·메뉴얼 개발 · 언론정보 · 홍보자료 및 인쇄비 · 임차료, 국내여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18,559	19,497	
-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2,149	2,499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활성화	88	88	
- 인건비	9,368	9,932	
· 경상 인건비	9,368	9,649	
·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	283	283 (인건비 편입)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99,970	91,504	△8,466

※ 2024년부터 민간보조금이 민간위탁비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과 동일하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음.

※ 2023년까지 진행하던 음주폐해예방교육(절주예방교육, 학교금주교육 등)이 폐지되었음.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체계도>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음주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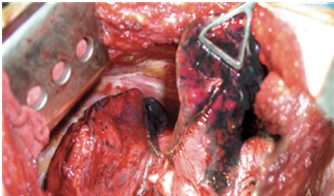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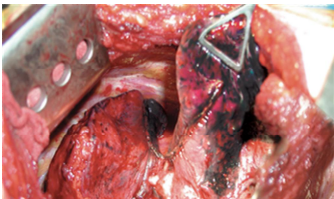
【참고5】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
--------------	-----------------------

단위: 표준화%(SE)

산출 지표	'98	'01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 율 (일반 담배) (19세 이상)	35.1 (0.6)	30.2 (0.6)	28.8 (0.7)	25.3 (1.2)	27.8 (0.7)	27.3 (0.6)	27.5 (0.7)	27.1 (0.9)	25.8 (0.8)	24.1 (0.9)	24.2 (0.8)	22.6 (0.8)	23.9 (0.9)	22.3 (0.9)	22.4 (0.8)	21.5 (0.8)	20.6 (0.8)	19.3 (0.8)	17.7 (0.9)	19.6 (0.8)
담배 제품 현재 사용 률 (19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9 (0.8)	23.4 (0.8)	22.8 (0.9)	22.1 (1.0)	23.9 (0.8)
고위험 음주율 (19세 이상)	- -	- -	11.6 (0.4)	12.5 (0.7)	15.4 (0.6)	13.5 (0.6)	13.8 (0.7)	14.1 (0.6)	13.9 (0.7)	12.6 (0.6)	13.5 (0.7)	13.3 (0.7)	13.8 (0.6)	14.2 (0.6)	14.7 (0.6)	12.6 (0.6)	14.1 (0.6)	13.4 (0.6)	14.2 (0.8)	13.8 (0.8)
월간 폭음 률 (19세 이상)	- -	- -	36.2 (0.7)	37.1 (1.1)	39.5 (0.8)	40.0 (0.8)	39.9 (0.8)	39.0 (0.7)	38.0 (0.9)	37.4 (0.8)	37.5 (0.9)	38.7 (0.9)	39.3 (0.8)	39.0 (0.8)	38.9 (0.8)	38.7 (0.9)	38.4 (0.9)	35.6 (0.8)	37.4 (1.1)	37.2 (1.1)
유산 소신 체활 동실 천율 (19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58.3 (0.9)	52.7 (1.0)	49.4 (1.0)	48.5 (0.9)	47.6 (1.0)	47.8 (1.0)	45.6 (0.9)	47.9 (0.9)	53.1 (1.0)	52.5 (0.9)
주관 적건 강 인지 율 (19세 이상)	42.5 (0.7)	44.7 (0.7)	46.8 (0.5)	32.4 (1.3)	42.8 (0.9)	43.9 (0.9)	36.6 (0.8)	36.0 (0.9)	33.1 (0.9)	35.1 (0.8)	32.5 (0.9)	32.0 (0.9)	32.3 (0.7)	29.2 (0.7)	31.9 (0.7)	33.9 (0.9)	31.2 (0.8)	36.5 (1.2)	38.4 (1.2)	36.9 (1.0)
에너 지 필요 추정 량 대비 섭취 비율 (1세 이상)	91.4 (0.8)	90.1 (0.8)	96.5 (0.7)	88.5 (0.9)	90.5 (0.6)	91.1 (0.6)	99.9 (0.7)	98.5 (0.8)	96.6 (0.8)	100.3 (0.8)	100.1 (0.7)	101.6 (0.8)	98.3 (0.8)	97.1 (0.9)	95.8 (0.8)	94.1 (0.7)	91.8 (0.8)	89.9 (0.8)	89.2 (0.6)	90.8 (0.6)
과일 및 채소 500g 이상 섭취 비율	39.9 (0.9)	42.1 (0.9)	30.0 (0.8)	35.7 (1.1)	35.0 (0.8)	35.4 (0.8)	37.8 (0.9)	36.5 (1.0)	35.8 (1.1)	35.6 (0.8)	38.2 (1.0)	38.6 (0.9)	33.1 (0.9)	31.4 (0.8)	26.2 (0.7)	28.1 (0.8)	26.2 (0.9)	25.5 (0.7)	22.7 (0.7)	22.1 22.1

산출 지표	'98	'01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세 이상)																				
아침 식사 결식 률 (1세 이상)	11.1 (0.6)	18.8 (0.6)	19.9 (0.7)	22.6 (1.0)	22.6 (0.8)	21.5 (0.6)	21.9 (0.8)	21.4 (0.7)	23.4 (0.8)	23.9 (0.7)	24.1 (0.8)	26.2 (0.9)	27.3 (0.8)	27.6 (1.0)	28.9 (0.8)	31.3 (1.0)	34.6 (1.1)	31.7 (0.9)	34.0 (0.9)	34.6 (0.8)
영양 표시 이용 률 (6세 이상)	- -	- -	21.4 (0.6)	24.6 (1.0)	22.8 (0.7)	24.5 (0.6)	26.0 (0.8)	25.1 (0.7)	25.0 (0.8)	24.4 (0.6)	26.5 (0.7)	26.4 (0.8)	25.9 (0.7)	31.1 (0.8)	28.5 (0.8)	30.7 (1.0)	30.1 (0.9)	32.3 (0.9)	36.3 (0.9)	38.0 (0.8)
비만 유병 률 (19세 이상)	26.0 (0.6)	29.2 (0.7)	31.3 (0.8)	31.7 (1.1)	30.7 (0.8)	31.3 (0.7)	30.9 (0.7)	31.4 (0.9)	32.4 (0.9)	31.8 (0.7)	30.9 (0.9)	33.2 (0.8)	34.8 (0.9)	34.1 (0.9)	34.6 (0.8)	33.8 (0.8)	38.3 (0.9)	37.1 (1.0)	37.2 (1.0)	37.2 (0.9)
고혈 압 유병 률 (19세 이상)	25.0 (0.6)	23.2 (0.7)	22.4 (0.7)	19.4 (0.9)	20.8 (0.5)	20.9 (0.5)	21.3 (0.6)	23.6 (0.6)	23.4 (0.8)	22.0 (0.6)	20.1 (0.6)	22.1 (0.6)	23.3 (0.6)	22.0 (0.6)	23.1 (0.7)	22.2 (0.6)	22.9 (0.7)	21.4 (0.6)	22.1 (0.8)	20.0 (0.6)
당뇨 병 유병 률 (19세 이상)	- -	- -	- -	- -	- -	- -	- -	9.3 (0.4)	8.6 (0.4)	10.7 (0.5)	9.3 (0.5)	8.0 (0.4)	9.7 (0.4)	9.1 (0.4)	9.2 (0.4)	9.5 (0.4)	10.7 (0.4)	10.3 (0.4)	9.1 (0.4)	9.4 (0.4)
고콜레스테롤 증후 병 률 (19세 이상)	- -	- -	6.6 (0.4)	8.8 (0.6)	9.1 (0.4)	9.4 (0.4)	10.9 (0.5)	11.4 (0.5)	11.9 (0.5)	12.3 (0.5)	11.6 (0.5)	14.8 (0.6)	16.7 (0.6)	18.1 (0.6)	17.7 (0.7)	18.1 (0.6)	19.7 (0.6)	21.1 (0.6)	22.0 (0.7)	20.9 (0.6)

【참고6】	전자담배 부착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	---------------------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 2024. 12. 23.부터 시행				
1.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전자담배 (궤련형 및 기타유형)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